

한마음스포츠센터 약관

제정: 2008. 05. 06.

개정: 2014. 02. 01.

개정: 2014. 12. 01.

개정: 2016. 03. 01.

개정: 2019. 07. 01.

개정: 2022. 07. 01.

개정: 2023. 08. 01.

개정: 2024. 10.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안내데스크」라 함은 회원들의 등록 및 환불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약관의 효력과 변경 시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이 약관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센터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이용은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의무사항

제4조 (센터의 의무)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즉시 센터에 고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이라 함은 월 단위로 각 운동 시설별로 강습이용 및 자유 이용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할인회원」이라 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구성원 등 관련 조례에 의한 이용료 할인대상자로서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을 말한다.
3. 「일일회원」이라 함은 정해진 시간 내 센터 시설물을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하며, 이용가능한 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에 한한다.
4. 「신규회원」이라 함은 센터와의 신규 계약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으로 간주 한다.
 - 4-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 4-2. 환불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 4-3.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
5. 기존회원 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연속하여 재계약 한 자를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소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제한 또는 소멸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센터에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2-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한 경우
 - 2-2.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2-3. 명의도용 등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4.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개인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및 수질을 오염시켰을 경우
 - 2-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회원모집)

회원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정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월단위 회원 모집이 이에 해당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모집방법은 기존회원 우선 모집 후 정원 내에서 결원발생 인원을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프로그램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가입신청)

회원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을 의뢰한 자도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2조 (이용료)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용료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은 센터 운영상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2. 이용대상별, 프로그램별, 체육시설 및 이용시간대별 할인률은 관련 조례 등 별도의 할인규정에 따른다.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일자 이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기 등록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4. 이용료의 납부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원카드)

회원카드는 다음과 같이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1. 센터는 회원등록 시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카드를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 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4조 (계약해지로 인한 반환)

계약해지로 인한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천재지변이나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 1-2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
 - 1-3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2. 반환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하며, 주1회 이하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한다.
3. 반환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기 발급된 회원카드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회원카드, 회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4. 반환일은 반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15조 (프로그램 변경)

회원이 적어 프로그램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폐강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변경·폐강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변경은 월1회로 제한한다.
2.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이용료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물함 이용

제16조 (사물함 월이용료 및 보증금)

1. 사물함 월이용료는 실내골프장은 월10,000원, 개인사물함은 월3,000원으로 한다. 단, 신발장 대여는 무료로 한다.
2. 보증금은 사물함 종류에 관계없이 최초 대여 시 10,000원으로 하고, 사물함 열쇠의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보증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한 보증금은 사물함을 반납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제17조 (사물함 대여 및 반납)

1. 최초 대여 시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물함은 1인당 1개의 사물함 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신발장은 예외로 한다.
3. 회원간 사물함 양도·양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물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월단위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회원에 한하여 대여가 가능하며, 일일입장객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5. 개인사정으로 센터에서 수강중인 프로그램을 그만 둘 경우에는 7일 이내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물함 이용기간 연장)

1. 이용종료일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재등록 기간 내에 월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간 내 연장신청 및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물함 반납 시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종료일 익월 15일 경과 시까지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만료대상자로 간주 한다.

제19조 (사물함 강제회수 및 개인물품 처분)

1. 이용종료일 익월 30일까지 연장신청 또는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센터에서 강제로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다.
2. 이 경우 사물함 잠금장치는 교체하고 보증금으로 교체 비용을 충당한다.
3. 회수한 사물함 내에 보관중인 개인물품은 센터에서 30일간 보관하며, 이 기간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고가품은 관할경찰서로 이관하여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관이 불가능한 소모품은 센터에서 자체 폐기 처분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개인물품 보관책임)

1. 센터 사물함에는 귀중품, 현금, 위험물을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2. 사물함 내 개인물품 보관에 대한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기타사항

제21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일·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적용일 이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체육관 대관은 일·공휴일, 근로자의 날만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2. 센터는 시설의 정비, 보수 등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전항에 대한 휴관을 실시할 경우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해당기간의 일일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센터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22조 (책임한계)

도난, 상해 등에 대한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을 진다.
2.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3.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회원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 천재지변, 기타 센터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3조 (시설이용)

회원은 다음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시설 이용 시 반드시 공단 관계직원에게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프로그램 및 시간에 한하여 일일 1회 시설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는 시설이용을 할 수 없다.
2. 일일회원(수영·헬스)은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차장 이용 시 해당 프로그램 이용시간에 한해 약 2시간(장애인 3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센터는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무단주차 시 강제로 견인조치 할 수 있다.(견인료 회원부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센터 회원가입 시 센터 전문강사와 상담을 하여야 하고, 센터 시설물 이용 시 센터에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5. 센터는 혼자서 탈의 및 샤워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가족탈의(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탈의(샤워)실은 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가족탈의(샤워)실을 이용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 등)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자문위원회의 심의 후 가족탈의(샤워)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